

『寧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A Study on *Yeong-Guk Wonjong Gongsin-Nokgwon*

진 나 영 (Jin, Na Young)*

◁ 목 차 ▷

- | | |
|---------------------------|----------------------|
| 1. 緒 論 | 4. 『寧國原從功臣錄券』의 內容 分析 |
| 2. 『寧國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 5. 結 論 |
| 3. 『寧國原從功臣錄券』의 形態 및 體制 分析 | <참고문헌> |

< 초 목 >

『영국원종공신녹권(寧國原從功臣錄券)』은 인조가 1646년 심기원의 역모를 고변하고 진압한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영국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반사(頒賜)한 책이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영국원종공신녹권』 1책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및 경위를 알아본다. 녹권의 형태와 그 체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신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원종공신녹권』은 공신도감자(功臣都監字)의 목활자본으로 인출되었으며, 녹권의 체계는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모두 2,578명(1등 620명, 2등 636명, 3등 1,322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고인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었다. 대체로 등급이 높을수록 품계 또한 높은 편이며, 무반 계열의 직함이 많았다. 그리고 원종공신들의 신분을 4개의 계급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양반 1,830명, 중인 421명, 양인 241명, 천인 86명 순으로 양반이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要語: 寧國原從功臣錄券, 原從功臣錄券, 영국공신, 영국원종공신, 공신도감자

< ABSTRACT >

Yeong-Guk Wonjong Gongsin-Nokgwon (寧國原從功臣錄券) is a book which recorded the titles of position and the names of retainers who suppressed a rebellion caused by Shim Gi-won. This study aims to research into a collection of books at Yonsei university *Yeong-Guk Wonjong Gongsin-Nokgwon*, which were to analyze the reasons of grant, structure and forms, the characteristics of meritorious retainers' official positions and social status. As the result, *Yeong-Guk Wonjong Gongsin-Nokgwon* is the wooden type book which was made up Gongsindogam (功臣都監) letter type. The structure of the *Yeong-Guk Wonjong Gongsin-Nokgwon* was composed of the beginning (卷首)·the body (本文)·the end (卷末). *Yeong-Guk Wonjong* meritorious retainers formed the total of 2,578 persons (1st grade: 620 persons, 2nd grade: 636 persons, 3rd grade: 1,322 persons). Also an analysis of their family name confirmed that 1,830 persons were "Yang-ban (兩班)" which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 "Jung-in (中人)" were second group (421 persons), "Yang-in (良人)" were 241 persons and "Chun-in (賤人)" were 86 persons.

Key words: *Yeong-Guk Wonjong Gongsin-Nokgwon*, *Wonjong Gongsin-Nokgwon*, *Yeong-Guk Gongsin*, *Yeong-Guk Wonjong Gongsin*, Gongsindogam letter type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jny415@naver.com)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5일
서지학연구, 제73집, 5-3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5]

1. 緒論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던 칭호 혹은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공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공신 책봉 및 녹권(錄券)의 반사(頒賜)가 행해졌던 사실을 『고려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공신제도가 정착되어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을 각각 책봉하고, 이들에게 공신증명서로서 왕의 하명에 따라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반사하였다. 특히 원종공신에게 반사된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의 경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도 그 기록된 바가 많지 않아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원종공신의 책봉과 관련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정치적 사실 및 책봉시기별 녹권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적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인 『영국원종공신녹권(寧國原從功臣錄券)』은 인조(仁祖)조에 있었던 심기원의 역모를 고변 및 평정하는 데 힘을 쓴 공으로 책봉된 영국원종공신들에게 반사된 것이다. 공신도감에서 갖추고 있던 활자인 공신도감자(功臣都監字)로 인출된 목활자본으로, 임진왜란 이후 특히 인조조에 공신과 관련된 『회맹록(會盟錄)』과 녹권 등을 이 목활자로 인출하여 공신도감자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현재 영국공신과 관련된 연구는 행해진 바가 적고 특히나 영국원종공신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조선 후기 공신녹권의 분석을 통해 시대적 사회상과 공신 책봉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및 실제 녹권에 기재된 영국원종공신에 대한 정보가 상이(相異)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영국원종공신을 비롯한 『영국원종공신녹권』에 관해 녹권에 준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영국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당시의 정치·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공신책봉의 사유와 책봉된 공신에 대한 실상을 알아보고, 현존하는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녹권에 기재된 원종공신들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들의 직함(職銜)과 신분(身分)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원종공신의 구체적 분석을 포함한 그 당시 사회상을 알아보도록 한다.

2. 『寧國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2.1 頒賜事由

영국공신(寧國功臣)은 조선 인조 때 심기원(沈器遠) 등의 반정(反正) 음모를 평정한 공으로 내린 공신호(功臣號)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1623년(광해군 5)에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켜 왕위에 오른 인조가 재위기간 중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조반정의 명분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이인기, 유효립의 역모가 있었고, 1644년(인조 22) 3월, 황헌(黃憲)·이원로(李元老) 등은 심기원·이일원·권억 등이 인조를 제거하고 회사군(懷思君)을 추대하려 한 역모를 고변하여 구인후(具仁厚)·김류(金瑬) 등이 이들을 진압·체포하였다. 이는 훈신 사이의 정쟁적(政爭的) 성격을 띤 사건으로 친청(親淸)이 승리한 것이었다. 이에 5월 인조는 심기원의 역모를 진압함으로써 나라를 평안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영국공신을 책봉하였는데 구인후·김류·황헌·이원로를 1등, 신경호를 2등, 여이재·정부현·이계영을 3등에 녹훈하였으나¹⁾ 공신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었음이 논란이 되어 다음 달에 다시 공신을 책봉하였다.²⁾ 정공신은 모두 5명으로, 1등은 구인후와 김류 등 2명으로 심기원의 역모를 듣는 즉시 군사를 출동시켜 진압한 공로였다. 2등은 역모를 고변한 황헌과 이원로 2명이었다. 처음에는 영국 정공신을 2등까지만 책정하였는데 이는 태종 때 정사(定社)공신에 3등이 없다는 홍서봉(洪瑞鳳)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3등은 1646년(인조 24) 3월에 충청도에 거주하는 안익신(安益信) 등이 궤한 반란을 고변한 공로로 이석룡이 책봉되었다.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寧國 正功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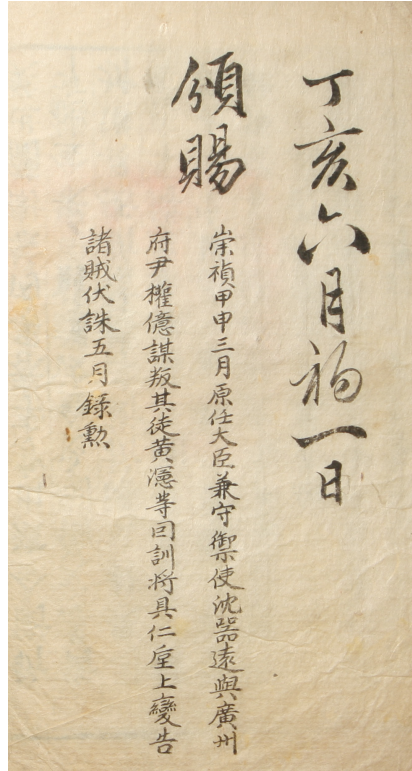
區分	人員數	姓名	책봉 사유
1등	2	具仁厚, 金瑬	심기원의 역모 진압
2등	2	黃憲, 李元老	
3등	1	李碩龍	안익신의 반란 고변

인조는 영국 정공신 책봉한 2년 후인 1646년(인조 24), 정공신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심기원의 역모 진압에 대한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인조실록』 권47 11월 24일 기사에 따르면 영국원종공신 2,655명을 녹훈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 녹권에 기재된 원종공신은 모두 2,578명으로 77명이 적었다. 이처럼 공신 인원수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대상본인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의 면지(面紙)에 묵서된 내용³⁾으로 추측한 결과, ‘丁亥[인조 24, 1647] 6월 1일 반사’라는 기록을 통해 공신 녹훈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실제 녹권이 반사가 이루어진 때가 약 6개월 후로 이 사이에 공신 녹훈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내용에 대한 해당 면지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1) 『仁祖實錄』 卷45, 仁祖 22年 5月 甲辰條

2) 『仁祖實錄』 卷45, 仁祖 22年 6月 辛酉, 壬戌條

3) 丁亥六月初一日頒賜, 崇禎甲申三月原任大臣兼守禦使沈器遠與廣州副尹權億謀叛其徒黃憲等○訓將具仁厚上變告諸賊伏誅五月錄勳.



<그림 1> 연세대 소장 『영국원종공신녹권』에 목서가 있는 면지(面紙)

이로써 1등원종공신은 620명, 2등원종공신은 636명, 3등원종공신은 1,322명으로 모두 2,578명이었다. 현재 웹상에서 서비스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영국원종공신의 수를 1,655명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다른 정보원 등에서도 인원수를 달리하고 있어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원종공신 중에는 정공신으로 선정되었다가 곧이어 삭제되었던 정부현(鄭傳賢)과 여이재(呂爾載) 등은 원종공신 1등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원종공신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1등원종공신은 대체적으로 종친(宗親)이나 신분 혹은 품계가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2등 및 3등원종공신은 1등보다는 낮은 신분이나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신분이 낮은 노비들도 함께 구성되었다.

2.2 受給者

『원종공신녹권』의 앞부분에는 녹권을 받는 대상인 수급자(受給者)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했다. 이는 녹권 수급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본 연구대상인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고서I)

929.3 공신록 영)의 수급자는 1등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심설(沈楸)’이다. 심설에 관한 정보는 적어 인물의 행적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청송심씨족보』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설의 생몰년은 1611(광해군 3)~1654년(효종 5)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자직(子直), 호는 일봉(壹峰)이다. 할아버지는 심경(沈憬)이고, 아버지는 심정인(沈廷寅)이다.

심설은 1633년(인조 11)에 진사(進士)가 되고, 형조좌랑(刑曹佐郎)을 거쳤으며 영국원종공신이 되었다. 묘지는 서산군 태안 남면(南面) 몽대리(夢垞里)에 있다.⁴⁾

3. 『寧國原從功臣錄券』의 形態 및 體制 分析

이 장에서는 『영국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본 『영국원종공신녹권』을 통해 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해보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3.1 現存本 現況

국내·외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을 살펴본 바, 현존하는 『영국원종공신녹권』은 8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현존본 『寧國原從功臣錄券』

No.	소장처	청구기호
1	국립중앙도서관	貴古朝 31-10
2		일산古2513-28
3	고려대학교	경화당B8-A3-25
4		대학원 B8 A3 25
5		화산 B8 A3 25
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貴 951.0512 Y43y
7		奎 3205
8	연세대학교	고서(I) 929.3 공신록 영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영국원종공신녹권』은 많은 수량이 현존하지 않고 있고, 영국원종공신에 대한 내용이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다. 영국원종공신의 책봉사유와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현존하는 『영국원종공신녹권』을 통해 알 수 있는

4) 靑松沈氏中宗 編, 『靑松沈氏家乘』 (서울: 靑松沈氏中宗, 1935), 388.

까닭에 녹권의 가치가 높다.

녹권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녹권에 기재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비교적 수월하였다.

3.2 形態 分析

『영국원종공신녹권』은 1646년(인조 24)에 공신도감자로 인출한 목활자본 1책(48장)으로 이루어졌다. 공신도감자는 공신도감의 장인들이 각종 녹권과 회맹록(會盟錄)을 찍기 위해 만든 나무활자이다.⁵⁾

일부 서적에서는 ‘주자(鑄字)로 인출하여 원종공신에게 1책씩 반급되었다’고 하여 영국원종공신녹권이 금속활자본이라고 기재하였는데⁶⁾ 실제로 인쇄된 한 면에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같은 모양의 글자가 적고 인쇄가 대체로 진한 편으로 여러 면에서 금속활자본이 아니라 목활자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녹권을 소장한 국내 도서관의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수장처에서는 공신도감자가 아닌 ‘선조실록자’ 혹은 ‘인조실록자’로 인쇄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이는 1603년(선조 36)에 실록청이 역대실록을 1차로 찍어낼 때 공신도감에 협조 의뢰가 있어 이를 도와준 것에서 비롯된 내용으로,⁷⁾ 종래 공신도감의 녹권과 회맹록은 실록자(實錄字)로 찍은 것으로 여겼으나 이는 공신도감자와 성격이 뚜렷이 구별되면서 『영국원종공신녹권』이 실록자가 아닌 공신도감자로 인쇄된 목활자본임을 알 수 있다. 추후 오기(誤記)된 각종 목록과 서적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영국원종공신녹권』의 형태서지사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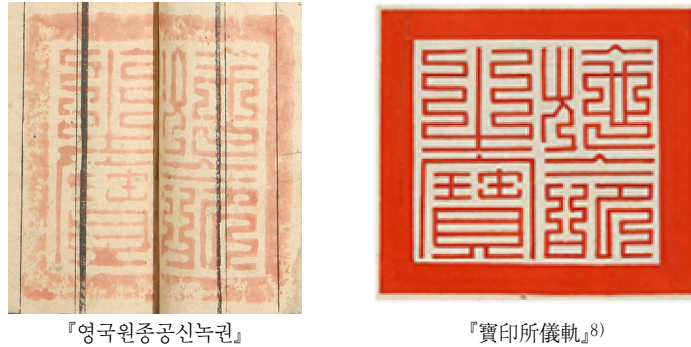
<표 3> 『寧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事項

寧國原從功臣錄券 / 寧國錄勳都監 編. - 木活字本(功臣都監字). - 漢城[서울] : 寧國錄勳都監, 仁祖 24[1646] 1冊(48張) : 四周雙邊 半郭 23.2 × 16.6 cm, 有界, 10行16字, 內向2葉花紋魚尾 ; 31.0 × 20.8 cm 表題名 : 寧國原從功臣錄 印記 : 施命之寶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23.0 × 16.2 cm이고 전체 책의 크기는 31.3 × 20.7 cm이다.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10행16자씩 배자되어 있고, 계선(界線)이 명확하게 보이며, 어미는 상하내향2엽화문어미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장(印章)은 왕의 교명·교서·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권수의 전지(傳旨) 부분, 등급별 특전을 적은 전지

5)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1), 55.
 6) 최승희,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3), 221.
 7)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455-459.

부분, 권말에 영국녹훈도감 구성원을 기재한 곳 등 3곳에 흐릿하게 주인(朱印)되었다. 주인된 「시명지보」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녹권에 주인된 「시명지보(施命之寶)」

3.3 體制 分析

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국원종공신녹권』도 이러한 체계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의 구성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寧國原從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 (施命之寶)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 (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 (施命之寶)
	傳旨	傳旨……(책봉사유)	
	等級別 功臣	職銜 姓名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名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 (施命之寶)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寶印所儀軌』(奎14212) 책01 「圖說」 063-064.

권수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체제는 공신 책봉과 관련된 봉교일(奉敎日)과 봉명자(奉命者), 녹권의 반사사유 및 경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교일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과 이를 시행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권말의 체제는 녹권의 발급기관명,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3.3.1 卷首

『영국원종공신녹권』의 권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순으로 이루어졌다. 권수제에는 녹권명을 기재하였고, 그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을 나타냈다.

3.3.2 本文

본문에서는 공신 책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인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전지(傳旨),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및 특전 시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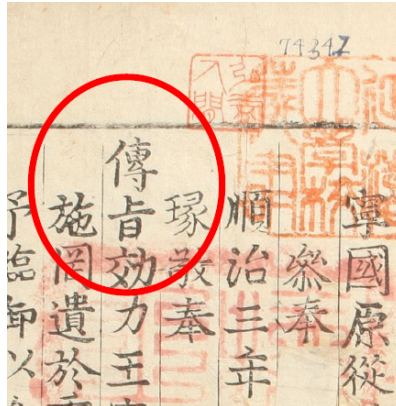
<표 5> 『寧國原從功臣錄券』의 本文 內容

順序	內容	奉命者
1	順治 3(1646)年 8月 20日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左副承旨 洪瑑
2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3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4	順治 3(1646)年 11月 23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吏曹 담당	同副承旨 南翽

1646년(인조 24) 8월 20일, 왕에게 공신을 책봉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좌부승지 홍진(洪瑑)⁹⁾이다. 다음 행에는 ‘전지(傳旨)’를 표기한 후,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는데,

9) 생몰년은 1606-1665년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자는 백윤(伯潤), 호는 죽암(竹巖). 홍여겸(洪汝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식(洪湜)이고, 아버지는 홍우직(洪友直)이다.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1638년 무재(武才)가 뛰어나다 하여 광주부윤(廣州府尹)에 특별히 기용되었으며, 1642년 강계부사를 거쳐 의주부윤이 되었다. 1645년 경상도방어사로 떠날 때 인조는 전마(戰馬) 1필과 갑주 1부를 하사, 격려하였다. 이듬해 우부승지에 이어 우승지가 되고, 1647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전에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청나라 관리에게 아침하기 위해 비용을 지나치게 사용하였다 하여 파직당하였다. 청주목사로 다시 기용되어 1651년(효종 2) 제주목사, 1653년 길주목사가 되었다. 1661년(현종 2) 진하 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한성좌윤이 되었다. 1664년 충주목사가 되고 이어서 한성우윤을 역임하였다.

‘전지’는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하였다. 이는 왕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설명한 전지 부분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영국원종공신녹권』의 傳旨 부분

『영국원종공신녹권』의 전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가(王家)에 힘을 다하여 노고(勞苦)가 비록 크고 작은 다름은 있으나, 충훈부(盟府)에 공훈(功勳)을 기록함에 그 배품을 경중(重輕)을 가리어 빠뜨릴 수 있겠는가? 이에 옛 법전(法典)을 좇아 새롭게 명(命)을 내리노라.

내가 왕위에 오른 후로, 불행히 화란(禍亂)이 서로 연이었던다. 적도(賊徒)들이 변란(變亂)을 가슴에 품고 감히 만일의 다른 뜻을 생각하니, 경각(頃刻)의 위기를 당하여 이에 삼천 인의 한 마음을 힘입어 평정했다. 저 적괴(賊魁)가 이미 형률(刑律)에 복주(伏誅)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고무(鼓舞)되어 상쾌하였도다. 기회를 타서 체포함은 원훈(元勳)에 말미암았지만, 의리를 잡아 흉도(凶徒)를 섬멸함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었다. 이에 황지(潢池)의 화(禍)가 있었으나, 모두 고가(膏街)에서 죽음을 당했다.

아아! 우리 경사대부(卿士大夫)로부터 서리(胥吏)·대례(僮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했다. 귀천이 없이 반드시 책록(策錄)하여 그 충성에 보답하고 등급을 두어 어긋나지 않게 모두 이 상을 주노라. 이에 원종(原從)의 녹권을 반포하노니, 이는 실로 봉작(封爵)의 나머지에 있는 바이다. 사유(赦宥)를 자손에게 미치게 하여 대대로 연이어 은택(恩澤)을 전하겠으니, 시중 힘쓰도록 하여 국가에 보답하는 충성을 그치지 말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教示)하노니, 생각하여 마땅히 다 알기 바란다.’¹⁰⁾

위의 전지의 내용을 통해 영국원종공신은 심기원 등의 역모사건을 다스리는 데 어느 정도 공이

10) 寧國錄勳都監 編, 『寧國原從功臣錄券』.

“效力王家勞雖異於大小紀功盟府施罔貴於重輕愛遵舊章用錫新命自予臨御以後不幸禍亂相仍變生腹心敢逞異圖於萬一危迫呼吸寢同德之三干渠魁已伏於典刑衆庶咸快於鼓舞秉機致捕縱由元勳秉義殲凶無非多助繼有潢池之孽並就藁街之誅嗟我鄉士大夫暨茲吏胥基隸無貴賤而必錄以酬其忠有等級而不差咸興是賞茲領原從之券乃在實封之餘宥及子孫既秉延世之澤勉盡終始毋替報國之誠故茲教示想宜知悉。”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녹권 반사 사유에 의해 당대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인조가 재위기간 중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명분을 잃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인조반정에 동참했던 심기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역모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병자호란 이후 공신 내부에서 드러난 반청(反淸)과 친청(親淸)간의 정쟁(政爭)으로, 반청 세력이었던 심기원 무리가 친청(親淸) 세력을 제거하려다가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친청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반청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한 사람들이 영국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지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620명, 2등은 636명, 3등은 1,322명으로 모두 2,578명이 기재되었으며,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는 ‘... 等乙良原從功臣〇等’이라고 묵등으로 나타내어 등급 간 구별을 쉽게 하였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다른 녹권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하였고,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3등공신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명과 같은 경우는 같은 성(姓)씨에 항렬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곳곳에 보였다. 예를 들면 ‘황희구(黃僖耆)’ 다음에는 ‘황학구(黃學耆)’, ‘황응구(黃應耆)’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직함의 공신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었으나 여기에서도 특별한 공신 나열에 관한 규칙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직함의 경우도 같은 직함인 경우 3-4명씩 줄지어 나열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일정한 규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녹권의 부분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직함	성명
	學生	黃僖耆
	學生	黃學耆
	學生	黃應耆

<그림 4> 같은 성씨와 항렬 돌림자 성명 및 같은 직함 나열의 예시

인조는 원종공신의 책봉을 명했던 날인 1646년 11월 23일에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동부승지 남훤(南翽)’¹¹⁾에게 전지하였다. 이로 인해 각 등급별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해 이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해졌다. 『영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寧國原從功臣에 대한 등급별 褒賞規程

區分	褒賞規程		
	선조조 이전 발급 녹권		寧國原從功臣錄券
一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承蔭有及後世
	부모	封爵	封爵
二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三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承蔭有及後世
各等 通政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跡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跡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敘用		並於本品敘用
在喪及 無故作散人	各加一資叙用		各加一資叙用
永不叙用人	許通仕路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並只還給
妾子	限品安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免賤
係干逆黨及因亦賊公 事間事被罪者	-		官爵一隸舉行安徐

* 굵은 글씨는 내용 중 상이한 부분을 나타냄

영국원종공신에게 내린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1등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부모를 봉작하게 했다. 2등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11) 생몰년은 1609~1656년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도(伯圖), 호는 창명(滄溟)이다. 증조부는 남호(南琥), 조부는 남이신(南以信)이고, 부친은 감사(監司) 남두첨(南斗瞻)이다. 외조부는 한응인(韓應寅)이고, 처부는 권현(權峴)이다.

1630년(인조 8) 경오식년사마시(庚午式年司馬試)에 생원(生員) 3등으로 합격하였고, 1636년(인조 14) 병자별시문과(丙子別試文科)에 을과(乙科) 2등으로 급제하였다. 1641년(인조 19) 정언(正言)이 되고 이듬해 지제교(知製敎), 부수찬(副修撰),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지냈다. 1651년(효종 2)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거쳐 승지(承旨)를 지낸 후 1655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저서로 『창명집(滄溟集)』이 있다.

한다. 각 등급에서 통훈대부(通訓大夫) 이상은 자손·형제·조카·사위 중에서 1인이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고,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본래의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되, 각각 1자급을 추증(追贈)한다. 범죄하여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아울러 본품(本品)에 서용(叙用)하며, 상(喪)중에 있거나 까닭 없이 산인이 된 경우에는 각각 1자급을 더하여서 서용한다. 길(吉)이 서용하지 아니할 사람인 경우에는 벼슬길[仕路]에 허통(許通)하게 하며, 직첩(職牒)을 거두어들인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 주고, 첩(妾)의 아들인 경우에는 한품(限品)하지 아니하며, 공천(公賤)·사천(私賤)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였다. 또한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간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 항목의 경우는 조선 선조조 이후 발급된 녹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 포상규정 및 특전이 달라진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조선의 사회상에 따른 신분변동을 고려한다면 조선 초기에서 후대로 흐름에 따라 공신의 신분에 대한 지나친 구분보다는 유연성이 생겼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선 정치사적으로 보면 하층 신분계급의 사람들도 공신으로 포용하면서 정치적 계략으로서 이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3.3.3 卷末

권말의 첫 행에는 녹권을 발급·반사를 주관했던 기관인 영국록훈도감(寧國錄勳都監)이라고 기재되었다. 이는 광해군대에 발급된 원공공신녹권에서부터 녹훈도감이라는 기관명이 나타나고 있다. 녹훈도감은 나라에 훈공을 세운 공신들에 대한 녹훈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기구로서 공신 책봉이 있을 시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녹권에 기재된 시기별 원종공신녹권 발급 주관 기관의 비교

그 다음 행부터는 영국록훈도감에서 녹권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원들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영국녹훈도감원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담당 官員의 官職·職銜

NO.	姓名	官職 · 職銜	備考	品階
1	金塗	堂上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大 臣輔國崇祿大夫昇平府院君	정공신 1등	종1품
2	李軸	堂上奮忠贊謨立紀靖社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輔國崇 祿大夫綾川府院君	정공신 1등	종1품
3	李時萬	郎廳通訓大夫行議政府舍人兼春秋館編修官漢學教授	-	정3품
4	李睨	監校郎廳禦侮將軍行龍驤衛司果	-	정3품
5	具塗	監造官奉正大夫行軍器寺主簿	-	정4품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도감원은 모두 5명이며, 실무 관리자인 당상 2명·낭청 1명·감교 1명과 감독관에 해당하는 감조관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관직을 가지고 있으나 임시 설치된 영국녹훈도감에 관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종1품부터 정4품까지 다양한 품계의 관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상에 해당하는 2명은 이미 영국 정공신 1등에 책봉되었던 김류와 구인후로, 정공신들이 책봉된 이후에 녹훈도감이 구성되어 원종공신 녹훈과 녹권 발급에 힘썼던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4. 『寧國原從功臣錄券』의 內容 分析

이 장에서는 영국원종공신을 등급별 직함과 이를 바탕으로 알아본 신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3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과 신분을 토대로 각각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영국원종공신들의 특징을 조사한다.

4.1 等級別 分析

4.1.1 寧國原從功臣一等

영국원종공신 1등으로 녹권에 기재된 사람은 모두 620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모두 헤아려보면 158종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寧國原從功臣 1等の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친족	麟坪大君, 崇善君, 完城府院君, 豊榮君, 綾山君, 綾峯君, 綾原大君	7	1.1
정1품	領中樞府事,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6	0.9
종1품	判義禁府事	2	0.3
정2품	府使, 知事, 知義禁府事, 判書	18	2.9
종2품	監司, 大司憲, 同義禁府事, 同知, 兵使, 府尹, 尙膳, 參判, 行大司憲	27	4.4
정3품	兼司僕, 內禁衛, 大司諫, 牧使, 武兼, 文兼, 尙茶, 尙醞, 上護軍, 宣傳官, 水使, 瀟靈豊都正, 承旨, 羽林衛, 折衝, 正, 參議, 參知, 僉知, 通禮, 通訓, 行大司諫, 行大司諫	94	15.2
종3품	副正, 司諫, 相禮, 虞候, 執義, 僉使	29	4.7
정4품	綾溪守, 綾洲守, 綾崗守, 舍人, 承傳色, 應教, 掌令	17	2.7
종4품	經歷, 郡守, 萬戶, 前郡守, 僉正, 把摠	38	6.1
정5품	校理, 別坐, 司直, 尙弧, 修撰, 正郎, 持平, 贊儀, 通德, 獻納	25	4.1
종5품	都事, 奉直郎, 副校理, 副司直, 尙帑, 前都事, 直講, 判官, 縣令	70	11.3
정6품	軍官, 都將, 別提, 司果, 司謁, 司評, 前司果, 典籍, 前佐郎, 正言, 佐郎	74	11.9
종6품	教授, 副司果, 部將, 尙洗, 尙燭, 守門將, 習讀, 引儀, 前監牧官, 前縣監, 主簿, 察訪, 縣監	83	13.4
정7품	假注書, 別將, 奉教, 注書, 參軍	15	2.4
종7품	啓功郎, 副司正, 前直長, 直長	12	1.9
정8품	待教, 別檢	3	0.6
종8품	奉事	12	1.9
정9품	檢閱, 尙更, 洗馬	5	0.8
종9품	假監役, 假引儀, 監役, 監役官, 檢律, 兼引儀, 權管, 武學, 副司勇, 尙苑, 參奉, 哨官	29	4.7
기타	假吏, 啓書, 官軍, 校生, 內官, 步兵, 補充隊, 私奴, 使令, 書吏, 書寫, 庶孽, 良人, 營吏, 進士, 出身, 忠翊衛, 學生, 閑良, 許通, 鄉吏	54	8.7
合計		620	100

위의 <표 8>을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94명에 해당하는 정3품으로 전체의 약 15.2%가 이 품계에 속해있다. 그 다음은 종6품이 83명인 13.4%를 구성하고 있다. 그 뒤로 정6품 74명의 공신이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5품에 해당하는 공신이 70명에 해당하는 11.3%를 구성하였다. 즉 정3품, 종6품, 종5품 및 정6품에 해당하는 공신들이 1등공신의 절반 정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원종공신 1등에는 모두 158종의 직함에 620명의 공신이 기재되었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1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반	인원수	비율(%)
1	司果	정6품	무반	46	7.4
2	都事	종5품	문반	27	4.4
3	縣監	종6품	문반	25	4.0
4	判官	종5품	문반	23	3.7
5	主簿	종6품	문반	20	3.2
합계				141	22.7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인원을 기재한 직함은 무반인 사과(司果)로 46명이었고, 도사(都事)는 27명, 현감은 25명, 판관(判官) 23명, 주부(主簿)의 직함을 가진 공신들이 20명이었다. 비교적 적은 비율에 속하지만 1등공신 중 약 22.7%가 위의 직함을 가진 공신들이었다. 1등공신들의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寧國原從功臣 1등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반	418	67.4
무반	179	28.9
종친 및 인척, 군	6	1.0
기타 ¹²⁾	17	2.7
합계	620	100

위의 <표 10>과 같이 620명의 1등공신 중에 문반이 418명으로 67.4%의 비율이었고 무반이 179명 인 28.9%로, 문반이 무반보다 더 많아 그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종친 및 인척이나 군(君)에 해당하는 공신은 6명인 1.0%로 이전에 비해 그 비율이 많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공신별로 책봉 사유가 다르고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추후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영국원종공신 1등의 경우는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확인한 결과, 특히 녹권 초입에 기재된 홍서봉(洪瑞鳳)·최명길(崔鳴吉)·김자점(金自點) 등은 병자호란이 발발 하자 화의(和議)를 주장하며 청나라와 내왕하며 화의를 위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영국원종공신 1등에 책봉된 공신들은 친청(親淸)의 성격을 띤 세력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문·무반을 구별할 수 없는 직함을 '기타'로 칭하였다.

4.1.2 寧國原從功臣二等

영국원종공신 2등에 책봉된 공신은 모두 636명이며 공신들의 직함은 114종으로 구성되었다. 직함을 기준으로 이를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寧國原從功臣 2等の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	0	0
정1품	-	0	0
중1품	-	0	0
정2품	文學, 府使	3	0.5
중2품	同知, 兵使, 兵將	4	0.6
정3품	兼司僕, 內禁衛, 武兼, 尙茶, 上護軍, 宣傳官, 禦侮, 羽林衛, 折衝, 僉知	162	25.5
중3품	輔德, 副正, 僉使	7	1.1
정4품	弼善, 兼弼善	2	0.3
중4품	郡守, 萬戶, 朝散, 僉正	16	2.5
정5품	翊衛	1	0.2
중5품	都事, 副司直, 司禦, 尙帑, 前判官, 判官, 縣令	25	3.9
정6품	監察, 軍官, 丹城監, 司果, 司書, 司諫, 司鑰, 翊贊, 前司果, 佐郎	67	10.5
중6품	副司果, 部將, 尙燭, 宣務郎, 守門將, 習讀, 丞, 衛率, 前部將, 主簿, 察訪, 縣監	66	10.4
정7품	博士, 別將, 副率	7	1.1
중7품	啓功郎	1	0.2
정8품	侍直, 算員	3	0.5
중8품	奉事	2	0.3
정9품	洗馬, 訓導	3	0.5
중9품	監役, 權管, 武學, 審藥, 參奉	13	2.0
기타	假書吏, 啓書, 館軍, 官奴, 校生, 軍人, 騎保, 內奴, 奴, 錄事, 律生, 免役, 免賤, 別監, 保人, 府奴, 寺奴, 私奴, 使令, 生員, 書吏, 書寫, 庶孽, 書員, 良人, 御營軍, 業武, 驛吏, 營吏, 隸習, 院奴, 醫員, 日守, 匠人, 諸員, 進士, 出身, 忠順衛, 忠義, 忠義衛, 忠義衛, 忠壯衛, 忠贊衛, 學生, 閑良, 鄉吏	254	39.9
合計		636	100

위의 <표 1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품계가 없는 기타에 해당하는 2등공신이 636명 중 254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기타를 제외하면 영국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된 636명 중 162명인 정3품이 25.5%를 구성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정6품과 중6품이 각각 약 10.5%를 이루었다. 1등공신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그 품계가 하위인 사람들을 2등공신으로 책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이 비교적 많은 점으로 보아 낮은 직함의 사람들도 공이 있으면 차별이 없이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영국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114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함을 기준으로 비교적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순으로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2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반	인원수	비율(%)
1	兼司僕	정3품	무반	109	17.1
2	良人	없음	없음	64	10.1
3	司果	정6품	무반	53	8.3
4	書吏	없음	문반	34	5.4
5	守門將	종6품	무반	30	4.7
합계				290	45.6

위의 <표 12>에서 보듯이 10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 직함은 정예 기병 중심의 친위병인 겸사복이었고, 그 다음은 양인이 64명으로 많았다. 오위(五衛)에 두었던 군직인 53명이고, 대궐이나 성의 문을 지켰던 수문장이 30명이었다. 2등공신에는 1등공신과 비교했을 때 품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함을 지닌 공신이 많은 비율이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 『영국원종공신록권』의 반사사유인 심기원의 역모사건 당시 정여립을 체포하거나 이에 대해 조사를 한 하급관리나 군사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신으로 많이 책봉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당시 수직계층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직함에 있어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심기원의 역모를 평정한 공이 있으면 모두 공신으로 책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다음으로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寧國原從功臣 2등의 文·武班 현황

區分	人員數	比率(%)
문반	179	28.1
무반	337	53.0
종친 및 인척, 군	-	0
기타	120	18.9
합계	636	100

영국원종공신 2등 636명 중에 무반에 해당되는 공신은 337명, 즉 53.0%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며, 문반은 179명으로 약 28.1%를 차지했다. 또한 1등공신과 비교했을 때 무반 공신이 더 많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기원의 역모를 군사적으로 평정하는 데에 힘쓴 공신들이므로 무반 계열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종친 및 인척, 군에 해당되는 공신이 1등에서는 있었으나 2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들은 노비에 해당하는 직함을 갖고 있거나 양인, 노비[奴] 등이다.

4.1.3 寧國原從功臣三等

영국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공신들은 모두 1,322명으로, 이들의 직함 및 관직의 구성은 109종이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직함 및 관직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기준으로 이들을 품계별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寧國原從功臣 3等の 분포현황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	0	0
정1품	-	0	0
중1품	-	0	0
정2품	-	0	0
중2품	-	0	0
정3품	兼司僕, 內禁衛, 宣傳官, 羽林衛, 前府使, 前羽林衛, 折衝, 正, 通訓	457	34.6
중3품	副正, 前僉使, 僉使	6	0.5
정4품	-	0	0
중4품	萬戶, 前郡守, 前萬戶, 前僉正, 僉正	21	1.6
정5품	別坐, 通德	2	0.2
중5품	副司直, 前判官, 判官	38	2.8
정6품	軍官, 司果, 承議, 前司果, 前司評	57	4.3
중6품	副司果, 部將, 守門將, 前部將, 前守門將, 前主簿, 前縣監, 主簿, 察訪	222	16.8
정7품	別將, 注書	2	0.2
중7품	前直長	1	0.0
정8품	別檢	1	0.0
중8품	奉事	4	0.3
정9품	司勇, 訓導	2	0.2
중9품	檢律, 教鍊官, 武學, 前權管, 參奉	17	1.3
기타	假吏, 假書吏, 刻字官奴, 監奴, 甲士, 貢生, 館軍, 官奴, 校生, 騎兵, 納粟, 內奴, 錄事, 能射, 燈燭色, 羅將, 律生, 免役, 免賤, 伴人, 防軍, 別監, 步兵, 保人, 府奴, 寺奴, 私奴, 使令, 生員, 書吏, 庶擊, 書員, 束伍, 守僕, 新選, 樂生, 藥房, 良人, 御營軍, 驛吏, 營吏, 隸習, 院奴, 幼學, 鷹師, 醫員, 日守, 匠人, 定虜衛, 正兵, 諸員, 漕軍, 出身, 忠義, 忠翊衛, 忠壯衛, 鍼醫, 破陣軍, 學生, 閑良, 鄉吏	492	37.2
合計		1,322	100

위의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3등원종공신에서 가장 많은 공신들이 포함된 품계는 기타¹³⁾로 492명인 37.2%가 이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3품이 457명으로 34.6%였으며 중6품의 공신이 222명으로 약 16.8%를 이루었다. 이들을 1등 및 2등원종공신의 품계 분포현황을 비교해볼 때, 대체

13) 진사 등 관직에 아직 나아가지 못했거나 신분이 낮아 품계를 갖지 않은 직함들을 말한다.

적으로 품계가 낮은 직함의 공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군(君) 등의 왕의 친족이나 인척인 공신은 2등과 마찬가지로 3등에 책봉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영국원종공신은 등급이 높을수록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품계가 대체적으로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품계가 낮은 직함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22명의 3등원종공신은 109종의 직함에 따라 인원수가 각각 달랐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3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반	인원수	비율(%)
1	兼司僕	정3품	무반	424	32.1
2	守門將	종6품	무반	137	10.4
3	良人	·	·	55	4.2
4	主簿	종6품	문반	50	3.8
5	司果	정6품	무반	43	3.3
합계				709	53.8

위의 <표 15>에서 보듯이 친위병인 겸사복이 32.1%로 전체 3등원종공신 중 약 1/3 가량 차지하였으며,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반 수문장이 137명으로 약 10.4%를 이루었다. 2등에서도 높은 비율로 구성되었던 양인이 3등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그 다음으로 낭관(郎官)인 주부 직함의 공신이 50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약 3.3%의 공신이 정6품의 무반직 사과였다.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寧國原從功臣 3등의 文·武班 현황

區分	人員數	比率(%)
문반	290	21.9
무반	852	64.5
종친 및 인척, 군	0	0
기타	180	13.6
합계	1,322	100

영국원종공신 3등의 문·무반 현황을 살펴보니 2등과 비슷하게 무반의 직함을 지닌 사람이 문반보다 더 많았고, 2등보다는 그 격차가 더 커졌다. 또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들, 즉 노비[奴] 혹은 양인(良人)인 공신들의 비율도 2등과 유사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2등·3등원종공신은 실질적으로 심기원의 역모를 평정하는 데에 힘쓴 무반직의 관리 혹은 군사나 하급관리들이 다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4.2 身分別 分析

조선의 신분계층은 대체로 양반(兩班)·중인(中人)·양인(良人)·천인(賤人)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계층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양인·천인 두 개의 신분계층¹⁴⁾ 양반·평민(平民)·천민(賤民) 세 개의 신분계층, 양반·중인·양인·천인 네 개의 신분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듯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각 계층의 개념과 범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일반적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네 개¹⁵⁾로 구분하여 각 신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4.2.1 兩班

양반은 문·무반 직함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신분계층으로, 각 등급별 양반의 인원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우의정(右議政) 등 45개의 직함¹⁶⁾은 각 1명,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등 29종의 직함¹⁷⁾은 각 2명, 대사헌(大司憲) 등 9종의 직함¹⁸⁾은 각 3명이었다. 내금위(內禁衛) 등 12종의 직함¹⁹⁾은 각 4명으로 파악되며, 수문장 등 8종의 직함²⁰⁾은 각 5명이고, 좌랑(佐郎) 등 4종의 직함²¹⁾은 각 6명이며, 승지(承旨) 등 3종의 직함²²⁾은 각 8명이었다. 부사(府使) 등 3종의 직함²³⁾은 각 9명이고, 무겸(武兼) 등 2종의 직함²⁴⁾은 각 11명, 첨정(僉正) 등 2종의 직함²⁵⁾은 각 12명, 학생(學生)이 14명이

14) 韓永愚 著, 『朝鮮時代 身分史研究』(서울: 집문당, 1997), 14-15.

15) 위의 네 개의 신분계층 이외에도 신랑역천(身良役賤)이라는 양·천중간(良·賤中間) 신분계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의 공민(公民)인 양인 계층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의 하나로, 양인 계층으로 볼 수 있다(李成茂, “朝鮮初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73).

1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瀟靈豐都正, 崇善君, 洗馬, 行副提學, 假監役, 檢閱, 假注書, 綾溪守, 領議政, 綾洲守, 領中樞府事, 大司諫, 完城府院君, 綾崗守, 右議政, 綾山君, 前監牧官, 奉直郎, 前郡守, 副司正, 前司果, 司直, 前佐郎, 相禮, 執義, 啓功郎, 贊儀, 待教, 參議, 綾峯君, 參知, 副司勇, 僉知, 司評, 哨官, 綾原大君, 忠翊衛, 麟坪大君, 通訓, 監役官, 把摠, 副司直, 豊榮君, 領中樞府事, 行大司憲 등 45종이다.

1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修撰, 知義禁府事, 進士, 獻納, 兼引儀, 軍官, 察訪, 應教, 參軍, 副司果, 監司, 左議政, 參判, 水使, 部將, 直講, 通德, 牧使, 通禮, 前直長, 舍人, 持平, 判義禁府事, 兵使, 都將, 縣令, 行大司諫, 注書, 上護軍 등 29종이다.

1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校理, 文兼, 正言, 大司憲, 司諫, 府尹, 典籍, 校生, 知事 등 9종이다.

1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虞候, 內禁衛, 經歷, 掌令, 副正, 監役, 判書, 同義禁府事, 前縣監, 兼司僕, 羽林衛, 副校理 등 12종이다.

2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引儀, 奉教, 權管, 習讀, 守門將, 別將, 參奉, 前都事 등 8종이다.

2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出身, 正, 引儀, 佐郎 등 4종이다.

2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承旨, 直長, 同知 등 3종이다.

2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萬戶, 府使, 正郎 등 3종이다.

2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武兼, 郡守 등 2종이다.

2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奉事, 僉正 등 2종이다.

며, 첨사(僉使)가 16명, 선전관(宣傳官)은 17명, 절충(折衝)이 18명, 주부(主簿)가 20명이었다. 또한 판관(判官)은 23명, 현감(縣監) 직함인 양반은 25명, 도사(都事)가 27명, 마지막으로 사과(司果) 직함이 4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가 이에 속한다. 총 126종의 직함을 가진 545명의 1등공신이 양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등에서는 감찰(監察) 등 34종의 직함²⁶⁾은 각 1명, 도사(都事) 등 15종의 직함²⁷⁾은 각 2명이었고 현감(縣監) 등 4종의 직함²⁸⁾은 3명이었다. 군수(郡守) 등 3종의 직함²⁹⁾은 각 4명, 부장(部將) 등 5종의 직함³⁰⁾은 각 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지(僉知) 직함은 7명, 만호(萬戶)는 8명, 절충(折衝) 직함인 공신은 9명이었다. 또한 판관(判官) 등 2종의 직함³¹⁾은 각 14명, 주부 등 2종의 직함³²⁾은 각 15명, 무겸(武兼)은 26명, 수문장이 30명, 사과는 53명이었으며, 검사복 직함의 양반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2등공신 가운데 양반은 72종 직함에 413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등에서는 통훈(通訓) 등 19종의 직함³³⁾은 각 1명, 군관(軍官) 등 3종의 직함³⁴⁾은 각 2명, 첨사(僉使) 등 7종의 직함³⁵⁾은 각 3명이었다. 첨정(僉正) 등 6종의 직함³⁶⁾은 각 4명, 우림위(羽林衛) 등 2종의 직함³⁷⁾은 각 5명이었고 전주부(前主簿) 등 1종의 직함은 6명, 학생(學生)의 직함은 8명이었다. 내금위 등 1종의 직함은 9명, 절충(折衝) 등 4종의 직함³⁸⁾은 각 10명, 전만호(前萬戶) 직함인 공신은 11명, 부장(部將) 직함은 16명이었고 출신(出身)의 직함은 22명, 판관(判官)의 직함은 26명이었다. 사과(司果) 직함의 공신은 43명이고, 주부(主簿)는 50명, 수문장 직함의 공신은 137명이며, 검사복이 직함인 공신은 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3등공신 중 양반은 872명이었고 52종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원종공신 2,578명 중 1,830명인 약 71%가 양반의 신분으로 확인되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니 1등은 126종 직함에 545명으로 1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약 87.9%로 대부분이 양반계

2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副正, 副司果, 文學, 丞, 忠贊衛, 丹城監, 參奉, 禦侮, 監察, 羽林衛, 忠翊衛, 司書, 弼善, 翊衛, 察訪, 司禦, 啓功郎, 上護軍, 博士, 生員, 監役, 前判官, 忠義衛, 同知, 軍官, 朝散, 兵將, 宣務郎, 輔德, 兼弼善, 進士, 訓導, 前部將, 前司果 등 34종이다.

2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衛率, 佐郎, 奉事, 副司直, 兵使, 副率, 縣監, 洗馬, 府使, 都事, 忠順衛, 習讀, 忠壯衛, 侍直, 翊贊 등 15종이다.

2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忠義, 僉正, 縣令, 宣傳官 등 4종이다.

2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郡守, 內禁衛, 別將 등 3종이다.

3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錄事, 僉使, 權管, 校生, 部將 등 5종이다.

3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判官, 學生 등 2종이다.

3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主簿, 出身 등 2종이다.

3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通訓, 前直長, 萬戶, 前府使, 忠壯衛, 司勇, 承議, 別將, 生員, 前司評, 前郡守, 注書, 通德, 察訪, 副正, 參奉, 訓導, 前守門將, 前羽林衛 등 38종이다.

3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軍官, 副司直, 前僉使 등 9종이다.

3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前權管, 錄事, 宣傳官, 副司果, 忠翊衛, 正, 僉使 등 7종이다.

3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前縣監, 忠義, 僉正, 前部將, 奉事, 前僉正 등 6종이다.

3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羽林衛, 幼學 등 2종이다.

3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折衝, 前判官, 校生, 前司果 등 4종이다.

층이었으며 사과(司果) 직함인 공신이 46명으로 많았다. 2등은 72종 직함에 413명으로 2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64.9%에 해당하며 검사복 직함의 공신이 109명으로 많은 수가 이에 해당하였다. 3등은 52종 직함에 872명으로 3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65.9%이며 검사복 직함의 공신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4.2.2 中人

중인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으로 양반을 도와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임하였다. 중인을 각 등급별로 그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내시부(內侍府)³⁹⁾ 상다(尙茶) 등 14종 직함⁴⁰⁾이 각 1명, 상선(尙膳) 등 7종의 직함⁴¹⁾이 각 2명, 상경(尙更) 직함의 공신이 3명, 영리(營吏)가 4명이며, 상탕(尙帑) 직함이 5명, 승전색(承傳色) 직함인 공신이 6명이었다. 또한 별제(別提)의 경우는 7명, 서리(書吏)는 8명이며 상촉(尙燭) 직함의 공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28종 직함의 70명이 중인 신분으로 영국원중공신에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등에는 사알(司謁) 등 4종 직함⁴²⁾이 각 1명, 서원(書員) 등 5종의 직함⁴³⁾이 각 2명, 의원(醫員) 직함의 공신은 3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약(司鑰) 직함인 공신은 4명, 무학(武學) 등 3종 직함⁴⁴⁾은 각 5명, 율생(律生) 등 2종 직함⁴⁵⁾이 각 6명, 별감(別監) 직함의 공신은 8명, 한량(閑良) 직함의 경우는 29명, 서리(書吏) 직함인 공신이 34명으로 많은 인원수가 이에 속하였다. 즉 22종 직함의 122명이 중인 신분이었다.

3등에는 별검(別檢) 등 3종 직함⁴⁶⁾에 각 1명, 공생(貢生) 등 3종 직함⁴⁷⁾에 각 2명, 율생(律生) 직함이 3명, 검률(檢律) 등 4종 직함⁴⁸⁾이 각 4명, 향리(鄕吏) 등 3종 직함⁴⁹⁾이 각 5명, 보병(步兵)이 7명, 영리(營吏)가 8명이었다. 또한 별감(別監) 등 2종 직함⁵⁰⁾이 각 11명, 의원(醫員) 등 2종 직함⁵¹⁾

39) 장희홍,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53-54.

“환관의 신분은 양인이나 양반의 본래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역에 있어서 품계를 받기 때문에 중인으로 대우받는 것이었다.”

40) 이에 속하는 직함은 尙茶, 檢律, 鄕吏, 尙洗, 教授, 尙醞, 步兵, 尙苑, 啓書, 書寫, 使令, 庶孽, 別坐, 閑良 등 14종이다.

41) 이에 속하는 직함은 尙膳, 內官, 武學, 假吏, 司謁, 別檢, 尙弧 등 7종이다.

42) 이에 속하는 직함은 尙茶, 司謁, 假書吏, 審藥, 算(筭)員, 營吏, 啓書 등 7종이다.

43) 이에 속하는 직함은 書員, 尙帑, 諸員, 書寫, 使令 등 5종이다.

44) 이에 속하는 직함은 武學, 庶孽, 尙燭 등 3종이다.

45) 이에 속하는 직함은 鄕吏, 律生 등 2종이다.

46) 이에 속하는 직함은 別檢, 別坐, 樂生 등 3종이다.

47) 에이 속하는 직함은 藥房, 貢生, 守僕 등 3종이다.

48) 이에 속하는 직함은 檢律, 鍼醫, 庶孽, 教鍊官 등 4종이다.

49) 이에 속하는 직함은 諸員, 假吏, 武學 등 3종이다.

50) 이에 속하는 직함은 別監, 使令 등 2종이다.

이 각 14명이었고, 향리(鄕吏)가 23명, 가서리(假書吏) 직함인 공신이 25명, 서리(書吏)가 36명, 한량(閑良) 직함인 공신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24종 직함의 229명이 중인 신분의 3등 영국원종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따라서 중인은 영국원종공신 2,578명 중 약 16.3%인 421명이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확인해보니 1등에서는 70명이 있었고, 2등에서는 2등공신 중 약 19.2%인 122명에 해당되었다. 3등에서는 3등공신 1,322명 중 17.3%에 해당하는 229명이 중인 신분이었다.

4.2.3 良人

양인은 양반과 천인의 중간 신분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며,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관군(館軍), 보충대(補充隊), 양인(良人) 직함에 각 1명이 있었다. 2등에서는 관군(館軍) 등 6종 직함⁵²⁾이 각 1명, 장인(匠人)과 군인(軍人)이 각 2명, 군사비 충당을 위해 정군(正軍)에 딸린 경제적 보조자인 보인(保人)이 3명, 양인이 64명으로 가장 많았다. 3등에서는 갑사(甲士) 등 9종 직함⁵³⁾에 각 1명, 납속(納粟) 등 5종 직함⁵⁴⁾에 각 2명, 장인 등 3종 직함⁵⁵⁾에 각 3명, 속오(束伍) 직함의 공신은 4명, 정병(正兵)은 7명, 나장(羅將)이 32명 그리고 보인 직함을 지닌 공신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이 영국원종공신 2,578명 중 양인 신분에 속하는 1등공신은 3명, 2등공신은 77명, 3등공신은 161명으로 전체 241명이며, 약 9.3%에 해당하는 인원이 양인 계층이었다.

4.2.4 賤人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던 계층으로 당시 천역(賤役)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마치 등을 이른다. 이들의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사노(私奴)와 허통(許通)의 직함에 각 1명이 있었다. 2등에서는 노(奴) 등 6종 직함⁵⁶⁾에 각 1명과 내노(內奴)와 원노(院奴) 직함의 공신이 각 2명, 사노(私奴)와 관노(官奴)는 각 7명이 있었다. 3등에서는 사노(私奴)와 각자관노(刻字官奴)의 직함에 각 1명, 내노(內奴)와 예습(隸習)의

51) 이에 속하는 직함은 醫員, 書員 등 2종이다.

52) 이에 속하는 직함은 業武, 免役, 驛吏, 騎保, 館軍, 御營軍 등 6종이다.

53) 이에 속하는 직함은 甲士, 防軍, 伴人, 御營軍, 漕軍, 燈燭色, 破陣軍, 新選, 館軍 등 9종이다.

54) 이에 속하는 직함은 納粟, 免役, 鷹師, 能射, 定虜衛 등 5종이다.

55) 이에 속하는 직함은 匠人, 驛吏, 騎兵 등 3종이다.

56) 이에 속하는 직함은 免賤, 奴, 日守, 寺奴, 府奴, 隸習 등 6종이다.

직함에 각 2명, 면천(免賤)이 3명, 관노와 일수(日守) 직함인 공신이 각 5명, 원노(院奴)가 6명, 부노(府奴)가 7명, 사노가 26명으로 모두 86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영국원종공신 2,578명 중 천인 신분의 1등공신 2명과 2등공신 24명 및 3등공신 60명으로 약 3.3%에 해당하는 86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양반·중인·양인·천인 등의 4종의 신분계층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인원수를 정리 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寧國原從功臣 중 身分別 分析

區分		人員數		比率
兩班	1等	545	1,830	71.1
	2等	413		
	3等	872		
中人	1等	70	421	16.3
	2等	122		
	3等	229		
良人	1等	3	241	9.3
	2等	77		
	3等	161		
賤人	1等	2	86	3.3
	2等	24		
	3等	60		
合計			2,578	100

위의 <표 17>과 같이 『영국원종공신록권』에 기재된 직함을 4종의 신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양반이 1,830명, 중인이 421명, 양인 241명, 천인 86명 순으로 양반의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약 71.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급별로 구분해보면 1등공신 629명 중 양반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인 70명, 양인 3명, 천인 2명이 있었다. 1등공신은 대부분 양반의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인, 양인, 천인의 신분으로도 책봉되었다는 사실이 눈에겨볼만하다. 2등공신 636명 가운데 양반은 413명, 중인 122명, 양인 77명과 천인 24명 순이었다. 3등공신 1,322명 중 양반은 872명이었고 중인 229명, 양인 161명, 천인은 8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보아 양반 신분의 공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중인과 양인 및 천인 신분의 사람들도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통해 신분의 제약 없이 영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전기 선조조에 발급된 『광국(光國)원종공신록권』과 조선 후기 인조조의 『영국원종공신록권』, 숙종조에 발급된 『보사원종공신개수록권(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에 기재된 공신의 신분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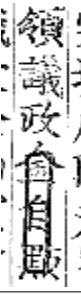

<표 18> 조선 시기에 따른 녹권별 공신 신분 비율 비교

區分	前期	후기	
	중종	인조	숙종
	광국원종공신녹권	영국원종공신녹권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
양반	85.8	71.1	57.5
중인	11.8	16.3	17.3
양인	1.5	9.3	12.8
천인	0.9	3.3	12.4
합계	100(872명)	100(2,578명)	100(3,940명)

위의 <표 18>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 선조조에 발급된 녹권(선조 24, 1591)에 기재된 공신의 신분 비율에 비해 조선 후기인 인조조에 발급된 『영국원종공신녹권』의 경우, 대체로 양반의 비율은 줄었으며, 이와 반대로 비교적 사회신분이 낮았던 중인·양인·천인의 비율은 높아졌다. 같은 후기 일지라도 『영국원종공신녹권』과 숙종조에 발급된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을 비교해보면 양반 비율은 낮아지고 그 외의 신분계급의 공신 비율은 높아졌으며 특히 천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통해 조선시대 사회상과 신분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조선 사회가 전기에서 후기로 지날수록 수직적인 사회가 점차 유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인 이하의 신분인 사람들도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어 신분상승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원종공신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여러 신분의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함으로써 당시 왕들이 정치적 확립과 응립을 추구하기 위해 원종공신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정치적 모습도 볼 수 있다.

4.3 削籍 分析

연세대 소장본 『영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삭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다른 소장본을 조사하던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貴古朝31-253)에서 삭적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외의 녹권에서는 삭적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 보인 삭적이 된 공신은 1등과 2등에 있었다. 1등은 영의정 김자점(金自點)이었고, 2등은 사서(司書) 김식(金弼)이었다. 녹권에 보이는 삭적 부분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順番	녹권 삭적 부분	등급	직함	성명
1		1	領議政	金自點
2		2	司書	金鉞

<그림 6> 녹권에 보이는 삭적 부분

위에서 확인한 삭적된 공신 김자점과 김식은 부자(父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자점은 인조조에 심기원의 역모사건 이후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였고 인조의 신임을 얻었으며 청나라의 위세에 붙어 정치적 입지를 굳혀갔다.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급속하게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의 아들인 김련(金鍊)·김식과 손자 등과 역모를 꾀하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자점과 김식이 『영국원종공신녹권』 발급 이후에 삭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녹권의 삭적은 종종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동일 녹권이라 하더라도 삭적이 된 것과 삭적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공존하는 사실로 보아 발급된 후에 역모 등의 사건으로 이름나게 되면 녹권 소장자가 자발적으로 삭적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5. 結 論

이 연구는 1646년(인조 24) 심기원의 역모 사건을 고변하고 다스린 데에 공헌한 영국원종공신에게 반사된 『영국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발급사유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원종공신녹권』은 인조가 1646년 심기원과 권역 등의 역모사건을 고변하고 처리하는

일에 힘써 공을 세운 신하들 2,578명(1등 620명, 2등 636명, 3등 1,322명)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그들에게 반사한 공신 증명서이다.

둘째, 『영국원종공신녹권』은 현재 8곳의 소장처에 8책이 진존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 및 연세대 도서관 등에 수장되어 있다. 녹권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영국원종공신녹권』은 공신도감자로 인출한 목활자본 1책으로 영국녹훈도감에서 발급하였다. 연구대상본의 서지적 특징은 사주쌍변, 상하내향2엽화문어미의 형태를 보였다. ‘施命之寶’의 인장이 권수제면, 포상 규정 및 특전, 영국녹훈도감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부분의 3곳에 주인되었다.

넷째, 『영국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다른 녹권의 형식과 동일한데,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는 녹권의 발급기관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봉명일·봉명자, 반사사유,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은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직함과 성명 등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다섯째, 영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은 모두 2,578명이며, 3등급으로 구분되어 『영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되었다. 이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158종의 직함에 모두 620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정3품은 94명, 종6품에 해당하는 83명, 정6품은 74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사과(司果)가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2등원종공신은 114종의 직함에 모두 636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라 품계에 속하지 않는 직함에 속하는 공신이 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3품이 162명, 정6품이 67명이었으며 종6품이 66명 순으로 많았다. 직함별 인원수는 무반 계열의 겸사복(兼司僕)이 109명으로 가장 많이 기재되었다. 3등원종공신은 109종의 직함에 모두 1,322명이었으며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거나 품계를 갖지 못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이 492명으로 많은 공신들이 구성되었고, 정3품에 해당되는 공신은 457명, 종6품은 222명이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2등과 마찬가지로 겸사복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문장이 137명, 양인 55명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여섯째, 『영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양반 545명, 중인 70명, 양인 3명, 천인 2명이었고, 2등원종공신은 양반 413명, 중인 122명, 양인 77명, 천인 24명이었다. 3등은 양반 872명, 중인 229명, 양인 161명, 천인 60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각 등급별 신분은 양반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모든 등급에서 양반을 비롯하여 중인, 양인, 천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재됨으로써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현존하는 『영국원종공신녹권』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貴古朝31-253)이 유일하게 삭적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삭적된 공신은 1등 김자점과 2등 김식(金弼) 부자(父子)로, 효종조에 일어난 김자점의 역모 사건으로 본 녹권이 발급된 이후 녹권 소장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삭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권의 발급 대상자의 내용과 직함을 분석한 결과, 등급이 낮아질수록 직함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신분을 분석한 결과 양반뿐 아니라 중인, 양인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아 천대를 받던 천인에게까지 포상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 시기별 공신의 신분 비율을 비교한 결과,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비율이 낮아지고 중인·양인·천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공신들의 신분 분석을 통해 수직적이고 경직되었던 조선 사회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유연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 질서가 점차 동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종공신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여러 신분의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함으로써 당시 왕들이 정치적 확립과 응립을 추구하기 위해 원종공신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정치적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조선시대 원종공신의 책봉에 관한 사실을 조사 정리함으로써 조선 원종공신 인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신 녹훈 사실을 토대로 조선시대 신분의 변천사 및 원종공신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대한 역사 연구에 일정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古典資料

『經國大典』

『寧國原從功臣錄券』

『朝鮮王朝實錄』 仁祖24年 11月 丙寅(條)

2. 單行本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서울: 가람기획, 2002.

千惠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千惠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崔承熙. 『古文書を 통해 본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2003.

3. 論文

노기춘. “振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9輯(2008). 169-200.

李成茂.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73-191.

진나영.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2009. 12). 427-456.

진나영.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2008. 12). 391-415.

진나영. “平難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50(2011). 275-315.

崔承熙. “朝鮮後期 原從功臣錄券과 身分制 동요.” 『韓國文化』 第22輯(1998). 113-157.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장희홍.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4. Web

청송심씨대종회 [2017.11.07.] <<http://www.csshim.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7.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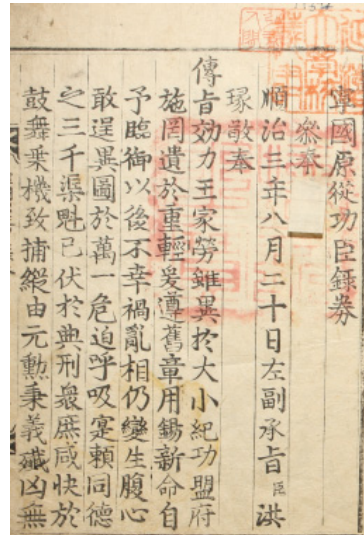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17.11.02] <<http://people.aks.ac.kr/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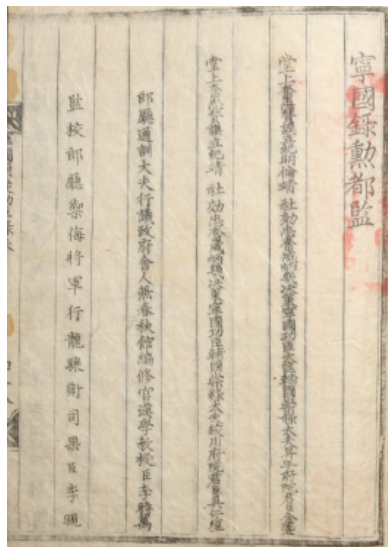
[附錄] 寧國原從功臣錄券 書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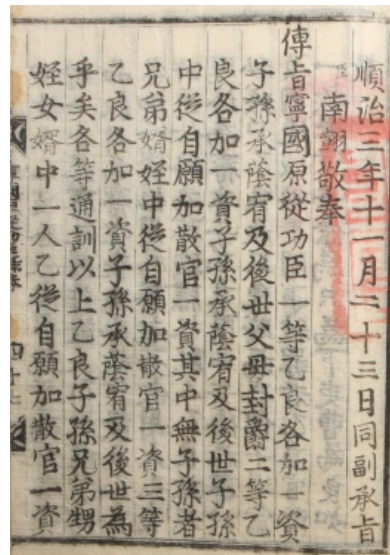
<등급이 바뀌는 면>



<권수제면>



<녹권 간행 담당관원의 직함과 성명의 면>



<포상규정 및 특전이 시작되는 면>